

환경부 공고 제2007 - 129호
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

**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**
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

**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**
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

2007년 4월  
**환경부장관**

**1. 개정이유**

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중장기계획(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) 수립 등 주요 설치목적 달성과,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주로 실행적인 사항에 한정되어,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,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 설치허가의 취소에 대한 재량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정부 보조하에 부착·개조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(이하 '저감장치 등')의 성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·공급 또는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조정하고,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과 서울특별시 등에서 각각 차관과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변경(안 제11조제2항)
- 나. 법 제21조제1항제3호(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)를 삭제
- 다.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장치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(안 제25조제8항)
- 라.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안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 등에게 이의 시정명령권 부여(안 제25조 제9항)
- 마. 저감장치 등의 인증 취소 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안 제25조8항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(안 제26조제3항제2호)
- 바. 부착·개조 후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·공급 또는 판매한 자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의 인증을 받은 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안 제46조제1항제4호)
- 사. 안 제29조제9항 서울특별시 등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안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안 제46조제2항제1호)

환경부 공고 제2007 - 160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. . . . .  
. . . . .  
. . . . .

2007년 4월 16일  
환 경 부 장 관

1. 개정이유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(대통령령 19770호, 2006.12.30 공포)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·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(안 제64조 별표18)

(1) 주유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유증기 회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규정

나.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 요건 합리화  
(안 제19조제1항, 제63조의2제1항)

(1)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함

(2)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거나,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함

환경부 공고 제2007 - 147호
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
입법예고

. . . . .  
. . . . .  
. . . . .

2007년 4월 17일  
환 경 부 장 관

1. 개정이유

먹는물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먹는물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의 적정성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검사기관 등에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4조제1항).

※ 보다 자세한 법률의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, 법령마당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